

## 21. 所得稅法中改正法律

法律 第5,031號 1995.12.29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중 “근로소득”을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으로 한다.

제1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일시재산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서화·골동품을 대통령이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3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 제2항중 “근로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제17조 제3항중 “100분의 22”를 “100분의 19”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 ①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대통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중 “근로소득”을 “근로

소득·일시재산소득”으로 하고, 동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 제20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  
·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  
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  
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  
품

제27조 제1항중 “사업소득금액”을 “사업  
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으로 한다.

제33조 제1항 본문중 “사업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으로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중 “600만원(대통령령  
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  
원)”을 “2천400만원”으로 하고, 동항 제3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  
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1만분의  
5(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1천분의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  
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  
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  
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  
액

수입금액	적용율
100억원이하	1천분의 3
100억원초과 1천억 원이하	3천만원 + 100억원 을 초과하는 금액 의 1천분의 2
1천억원초과	2억 1천만원 + 1천 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

제35조 제3항중 “금액을”을 “금액(사업자  
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  
출한 복지시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을 포함한다)을”로 하고, 동조 제5항을 삭  
제한다.

제41조중 “사업소득”을 “사업소득·일시  
재산소득”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행위”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제1항중 “근로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으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①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 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등을 시기로 하고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등을 총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 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기간으로 하여 제127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등이 원천징수기간 동안의 각 보유자가 당해 채권등을 각각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 및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의 계산과 보유기간의 입증방법, 원천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51조 제1항 본문중 “각호별로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를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51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6세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제52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 제4호 본문중 “유치원과 대학원” 및 “유치원

· 대학 및 대학원”을 각각 “대학원”으로 하며, “동항 동호 단서중 “한다.”를 “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유치원아인 경우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로 하고, 동항 제5호 가목중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를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53조 제5항중 “제51조 제1항 제1호”를 “제51조 제1항 제4호”로 한다.

제5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이하	7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4천만원초과	1천90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제56조 제1항중 “100분의 22”를 “100분의 19”로 하고, 동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것과 동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제58조 제1항중 “재해가 발생한 자산과 관련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으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적용순위 등) ①조세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전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58조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의 경우 납부할 소득세액에는 가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6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조세조약 또는 국제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고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제64조를 삭제한다.

제69조 제1항중 “부동산매매업자는 제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 제6항중 “계산”을 “계산 및 예정신고납부절차등”으로 한다.

제81조 제4항중 “100분의 3”을 “100분의 2”로 하고, 동조 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7항중 “제4항 내지 제6항”을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고 하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보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제84조중 “50배”를 “100배”로 한다.

제86조 제1호 내지 제3호중 “500원”을 각각 “1천원”으로 한다.

제94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95조 제2항 본문중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

다”로 한다.

제96조 제1호 단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을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 제2호 단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을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호 나목 단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 당시 기준시거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 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행위”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중 “제94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94조 제1호·제2호”로 한다.

제105조 제1항중 “거주자”를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08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양도소득세의 물납) ①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생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물납에 관한 승인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호중 “개발·이용권 또는”을 “개발·이용권, 어업권”, 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발생하는 소득 또는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 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

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동조 동항 제7호 및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부터 지급받는 소득”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 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제121조 제2항중 “부동산임대소득”을 “소득”으로 한다.

제127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외국법인이 발생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6호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20”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호에서 “장기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세율

〈장기채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세 율)
5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30
10년이상	100분의 25
〈장기저축의 최초계약체결 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	(세 율)
5년이상	100분의 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 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

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138조 제1항중 “소득공제신고서”를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로 한다.

제164조 제1항 본문중 “법인을 포함한다”를 “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속하는 달”을 “속하는 분기 종료일”로 하며, 동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5조(부동산양도 신고등) ①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거주자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에 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에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소유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부동산양도신고 및 확인서의 교부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6조 제1항·제165조 및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4호의2·제20조의2항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시재산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1항 제1호·제12조 제4호의2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각 해당 조항의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액감면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채권등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

징수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도 당해 이자등을 지급받는 자에게 이자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되, 원천징수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서 중도해지로 감액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소액불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각 해당 조항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개정규

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지급조서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2조(부동산양도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중 “100분의 20을”을 “100분의 15를”로 한다.

## ◇개정이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채권등의 과세방식을 보완하고, 5년이상 장기저축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을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하며, 각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등 소득세를 경감하고, 양도소득세를 효율적으로 과

세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시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확인서를 받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며, 서화·골동품등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현재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의 6가지로 되어 있는 종합소득에 일시재산소득을 신설하여, 거주자가 서화·골동품등을 양도하고 얻은 이익을 이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되, 1998년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하도록 함(법 제20조의2 제94조 및 부칙 제1조).
- 나. 채권등을 만기전에 법인에게 중도매각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함(법 제46조).
- 다. 취업여성 근로자와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에 대하여 6세이하의 자녀 1인당 연 50만원의 자녀양육비에 대한 공제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이 산업인력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법 제51조).
- 라.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조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각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며, 금융기간의 5년이상의 장기저축상품에 대하여는 30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법 제55조 및 법 제129조).
- 마.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불징수 기준금액을 현행 500원에서 국세기본법상의 고지최저한금액 수준인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함(법 제86조 및 법 제129조).
- 바.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처리하여 납세 관계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부동산을 매매하였을 때에는 당해 거래내용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등기신청시 첨부하도록 함(법 제165조).

〈법제처 제공〉